

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결산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년 6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

나. 회 부 일 자 : 2000년 6월 20일

다. 상 정 일 자 : 제174회충청북도의회제1차정례회

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00. 6. 20)상정

질의답변·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관리국장 고 일 영)

- 1999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억 1,228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 1,228만 6천원, 불용액은 1천원임.

(단위 : 천원)

건 명	지출결정액	지출액	불용액	비 고
손해배상 합의 배상금	145,460	145,460	0	기계공고 김선우학생 1심판결 50%
손해배상 합의 배상금	39,451	39,450	1	제천중 민간인 사망사고
손해배상 합의 배상금	121,385	121,385	0	기계공고 김선우학생 2심판결 (확정)
손해배상 합의 배상금	5,991	5,991	0	기계공고 김선우학생 치료비 공단부담금 50%
계	312,287	312,286	1	

3. 검토보고 요지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영 만)

-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사고 및 제천중학교 민간인 사망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배상금 지급에 따른 귀책 사유 규명 및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주요지적사항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: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(안) 1부 끝.

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(안)

○ 예비비 지출내역

(단위 : 원)

건 명	지출결정액	지출액	불용액	비 고
손해배상 합의 배상금	145,460	145,460	0	기계공고 김선우학생 1심판결 50%
손해배상 합의 배상금	39,451	39,450	1	제천중 민간인 사망사고
손해배상 합의 배상금	121,385	121,385	0	기계공고 김선우학생 2심판결 (확정)
손해배상 합의 배상금	5,991	5,991	0	기계공고 김선우학생 치료비 공단부담금 50%
계	312,287	312,286	1	